

광주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가단519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옥형,이용화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류재규

2. C

변론 종결 2019. 12. 20

판결 선고 2020. 1.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9. 8. 22.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위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3. 2. 13.접수 제2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C는 별지 목록 1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 4. 18. 접수 제122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는 사업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2003.경 고령에 뇌병변으로 사리분별이 밝지 못한 원고를 속여 다른 형제들과 나누기로 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은 2019. 7. 23.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에 정리하여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2.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10. 22. '피고 B가 원고를 강박하여 소취하서에 서명 하도록 하고 도장을 받아 제출하였는바 원고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와 마주앉은 자리에서 소취하에 관한 피고 B의 설명을 들었고, 소취하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피고 B가 건네준 안경을 쓰고 소취하서에 스스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8. 22.자 소취하는 유효하다고 보이고 그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9. 8. 22. 소취하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취하로 인한 소송종료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9. 8. 22.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 수민

별지